
碩士學位請求論文

KANT의 道德法則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許 正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吳 勝 用

1992年 2月

KANT의 道德法則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許 正 勳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2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吳 勝 用



吳勝用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KANT 윤리학의 道德法則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道德法則의 성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善意志와 道德的 義務에 관하여 검토 하였다. 善意志란 義務意識이 수반되는 意志를 말하며 義務意識에서 말미암은 행위만이 道德性이 있는 行爲가 된다.

KANT는 義務의 自覺은 法則에 대한 尊敬心에서 말미암은 것으로서 萬人이 그 法則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 道德法則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道德法則은 마땅히 실천되어야 할 當爲의 法則으로서 命命 즉 定言命法의 형식을 취하여 나타난다.

定言命法에는 다섯가지 類型이 있는 바 普遍法則의 定式, 自然法則의 定式, 目的自體의 定式, 自律의 定式, 目的의 王國의 定式이 그것이다. 이 各 類型은 우리 인간의 行爲가 道德法則과 一致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道德法則을 實踐할 수가 있을 것인가. 理性的 存在者인 인간에게 意志의 自由는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意志가 自由일 수 있음으로 해서 理性的 世界에서만 지배가 가능한 道德法則은 그 實踐이 可能하게 된다.

感性界와 可想界의 一員일 수 있는 兩面性을 띤 存在가 인간이긴 하지만 理性的人間은 可想界의 一員일 수 있기 때문에 道德法則이 實踐 可能하다고 할 수 있음을 論證하였다.

이 論文은 KANT의 「道德哲學原論」을 中心으로 하여 文獻研究의 方法에 의해 論究하였다.

目 次

I. 序 論	1
II. 道德的 善과 義務	3
1. 善意志	3
2. 道德的 義務	5
III. 道德法則의 性格	8
1. 準則과 原理	8
2. 法則과 命法	10
3. 假言命法과 定言命法	12
IV. 定言命法の 諸類型	15
1. 普遍法則의 定式	15
2. 自然法則의 定式	19
3. 目的自體의 定式	22
4. 自律의 定式	25
5. 目的의 王國의 定式	27
V. 道德法則의 實踐可能性	31
VI. 結 論	33

I. 序 論

인간 行爲의 올바른 길을 追求하고자 하는 倫理學은 東西古今의 哲學史를 통하여 볼 때 그 初期부터 哲學者들의 主要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理性은 모든 經驗을 떠나서 世界像과 超感性的 世界도 認識할 수 있다는 大陸의 合理論과 經驗이나 感覺的 世界만을 인정하는 經驗論이 맞서 있던 시대에 등장한 KANT는 이의 종합을 시도하였고 마침내 獨自의인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理性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理性에만 의지하여 理論을 定立하려 했던 合理主義 形而上學이 理性의 獨斷에 빠졌음을 주목하고 KANT는 이를 비판하고 경험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理論的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임을 분명히 밝혀 이를 實踐的 영역으로서 새로이 해석하였다. 理論理性에 의해서는 未知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可想的 世界가 形而上學의 대상으로 넘어가며 KANT는 이 부분을 道德的 世界로 본 것이다. 따라서 倫리학의 방법이 경험적 인식을 방법으로 하는 경험적 학문과도 같은 것일 수 없다고 하였다.

KANT는 先驗的 批判哲學의 바탕위에서 선험적 倫리학을 구축하였는 바 그의 倫리학은 상식적인 도덕적 인식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 사실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원리를 이끌어내어 이 원리 밑에서 道德 認識을 비판하려고 의도하였다.

KANT의 선험적 倫리학은 義務의 倫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의 가치는 그 행위의 結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義務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KANT의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行爲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개 外面的 行爲에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 外面的 行爲나 結果만 가지고 行爲를 평가할 때 세상

에는 僞善者만이 得勢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善한 행위란 善意志에 의한 행위, 즉 義務意識에서 행해지는 행위이며 그런 의무의 자각은 道德法則에 대한 존경에서 말미암은 것이기에 도덕법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도덕의 原理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理性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실천적 諸原則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한 思辨의 動因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을 이끄는 실마리와 도덕을 바르게 평가하는 최고의 규범이 없는 한 도덕 자체가 모든 종류의 타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라고 하였다.

本稿의 목적은 道德法則의 性格과 定言命法, 善意志와 義務等の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KANT 倫理學의 本質이 도덕법칙의 성립과 그 실천에 있음을 부각시켜 보고 道德法則의 實踐可能性을 찾아보는 데에 있다. KANT의 「道德哲學原論」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해서 論究하고자 한다.



1) I. KANT (1785), 「道德哲學原論」, 鄭鎮譯 (1970), 을유문화사, p.12.

II. 道德的 善과 義務

1. 善意志

KANT 윤리사상의 출발은 善意志에서 부터이다. “세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밖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무제한적으로 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善意志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²⁾

이 귀절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서 善한 것 즉 본래적인 善의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善意志 뿐이다. 善意志란 옳은 행동을 오로지 옳다는 이유에서 택하게 되는 의지를 말한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또는 自然的인 경향을 따라서 옳은 행동으로 풀리는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행위가 옳다는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택하게 되는 의지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는 명석한 두뇌, 뛰어난 판단력, 풍부한 諧謔과 같은 재능이라든가 용기, 果斷性, 持久力과 같은 氣質, 權力, 富, 名譽, 健康, 滿足과 같은 幸福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만일 사기꾼이 이러한 재능이나 기질을 가지고 성공하였다면 아무도 그러한 재능이나 기질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기꾼이 權力이나 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들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는 惡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재능, 기질, 행복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善은 될 수 있으나 그

2) 上揭書, p.25.

자체로서 **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³⁾

善意志는 어떤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며, KANT에 의하면 인생의 가치는 획득된 행복의 분량에 의해서 측정될 것이 아니라 **善意志**가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나타났느냐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고의 것이 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단지 상대적으로 좋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善意志**의 개발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KANT는 **幸福主義 倫理**를 거부한다. 그러나 행복 자체를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선의지에 의한 행위의 결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행복까지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道德的 心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의 최고 목표를 행복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善意志가 최고 가치라는 사실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가? **善意志**는 항상 **善**이다라는 명제는 선한 의지는 항상 선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참이다.

KANT가 **善意志**에 대하여 의미한 바는 오직 선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나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善意志**는 어떤 상황에서는 선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악하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선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악한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의지의 선택은 어떤 맥락이나 목적이나 욕구 등과의 관련에 의해서 조건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선의지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선하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선하며 단순히 다른 어떤 것과의 관련하에서 선한 것이 아니다. 선의지의 선택은 이런 저런 관련하에서의 선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선의지는 제한이나 조건, 제약이 없이 선하다.

3) 金永喆(1983), 「**倫理學**」, 學研社, p.110.

善意志의 本性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KANT는 의무의 개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善意志의 概念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 이 의무의 개념은 어떤 주관적 제한과 妨害下에 있기는 하나 선의지의 개념을 포함한다.”⁴⁾고 하고 있다.

2. 道德的 義務

KANT는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할 善意志라는 개념을 의무라는 개념에서 이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의무의 개념은 그 자체속에 선의지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愛着心이나 恐怖感에서가 아니라 義務意識에서 의욕하고 행해졌을 때 곧 善意志인바 선의지의 개념을 통해서 의무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KANT는 인간 행위의 道德的 價値의 근거를 의무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윤리를 의무의 윤리라고도 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와 도덕성은 오직 의무에 적합한 행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정한다. 다시 말하면 의무의식에서 말미암은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의무여! 너 숭고하고도 위대한 이름이여! 너는 사람이 너를 좋아할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너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한다.”⁵⁾라고 하면서 의무의 위대함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의무의식에서 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상인이 상업의 번창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정직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결코 義務意識에서 말미암은 행위는 아니므로 결코

4) I.KANT, 鄭鎮譯, 前掲書, p.32.

5) I.KANT(1981), 「실천이성 비판」, 최재희역(1975), 박영사, p.96.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상인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의식에서 고객에게 정직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KANT에 의하면 의무에 맞는 행위는 適法性은 있을지 모르나 道德性은 없다. 道德的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위는 오로지 義務意識에서 말미암은 행위 뿐이라는 것이다.

의무를 떠나 사랑, 同情, 幸福 등에서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惡이라든가 人間生活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의무의식에서 말미암은 행위를 함으로써만이 인간 內心의 淨化를 기대할 수 있고 僞善者의 得勢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 행위의 평가는 外面的 行動이나 行爲의 結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動機 즉 의무의식에서 말미암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한다는 動機主義를 취한다.

“KANT는 단지 한 행위는 정확히 의무를 행하려는 의지로부터 생겨난 한에서만 善하며 의무를 행하려는 의지가 어떤 경향성의 도움도 없이 그 자체로 행위를 산출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행위가 선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없다.”⁶⁾고 하였다.

KANT가 도덕적 행위를 논할 때 의무에서 말미암은 행위를 강조한 까닭은 행동의 진정한 도덕적 성격은 그 행동이 愛着心에 대항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善意志는 의무로부터 말미암아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따라서 선의지가 추구하는 의무 또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어떤 의무도 상대적일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행위 주체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무는

6) H.J.페이튼(1970), 「칸트의 도덕철학」, 김성호역(1988), 서광사, p.67.

없다. 의무인 한에서 의무는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지 절대적으로 복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의 절대성과 필연성 그리고 보편성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나 愛着心에 의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의 그와 같은 경험적인 모든 근거들은 당위와 의무의 필연성이나 보편성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의무의 규정 근거로서 '순수이성의 근본 개념' 즉 이성의 合法則性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그것은 '단순한 보편적 입법의 형식', 즉 순수이성에 의해 의지에 부과되는 형식적 법칙이다. 따라서 의무는 형식적인 이성의 법칙(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그러므로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지에 남아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만이 있고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적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따라서 모든 나의 경향을 중단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법칙에 복종하라는 준칙만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道德적으로 선한 행위란 善意志에서 비롯된 행위 즉 의무의식에서 행해진 것이며, 또 도덕적 善이 의무를 자각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려는 행위라면 義務의 自覺은 法則에 대한 존경에서 말미암은 行爲의 必然性이라고 하여 道德法則이 있어야 하고 이를 行함이 道德的 善의 實現이라고 하였다.

7) I.KANT, 鄭鎮譯, 前掲書, pp.38~39.

Ⅲ. 道德法則의 性格

1. 準則과 原理

앞에서 의무의 보편성과 필연성의 근거는 '단순한 보편적 입법의 형식'이라고 말했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 먼저 행위의 준칙과 원리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한 행위의 價値가 追求하거나 얻어지는 結果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가치는 그것의 동기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이 動機는 어떤 結果를 산출하려는 단순한 욕구 이상의 다른 것이어야 한다. 한 행위는 자신의 價値를 스스로의 準則으로부터 도출하며 또한 그 準則은 結果를 산출함에 있어서의 準則이 아니라는 것이다.

準則은 특정한 종류의 원리이며 행위의 주관적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원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근거가 되는 다른 명제들을 포섭하고 있는 보편명제이다. 엄격히 말해서 原理는 더 이상의 근거가 없어야 한다. 즉 원리란 절대 최고의 원리가 되는 셈이다.

인간은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므로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행동과 구별이 된다. KANT는 "自然의 萬物은 法則에 따라서 움직인다. 오직 理性的 存在만이 자신의 法則의 觀念에 따라 즉 原理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⁸⁾고 말한다.

實踐의 原理도 普遍命題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명제나 판단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위의 근거이다. 실천적 원리들에는 우리의 행위에 실제로 작용하는 原理, 즉 우리 행위의 참된 근거가 되는 원리가 있는 바 KANT는 이를 주관적

8) I.KANT, 鄭鎮譯, 前掲書, p.63.

원리라고 부른다. 주관적 원리는 오직 행위자에게만 그가 행위를 선택하는 원리로
서 타당하다. 이와 반대로 客觀的 原理란 어느 이성적 행위자도 이성이 자신의 욕구
능력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위하게 될 원리이다. 그래서 객관적 원
리는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 타당하며 理性的 原理라 불리울 수가 있다.

主觀的 原理가 主觀的 原理이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라 행위되어야 한다. 즉 우리
가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는 경우에만 그 원리는 主觀的 原理이다. 그렇지만 말할 필
요도 없이 우리가 항상 객관적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원리는
우리가 그것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여전히 客觀的 原理이다. 그러나 우리는 客
觀的 原理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 이것은 객관적 원리
인 동시에 主觀的 原理가 된다.

KANT는 主觀的 原理를 준칙이라고 한다 準則은 各各의 행위자에게만 準則으로
서 타당하다는 점에서 客觀的 原理와 구별되며 오직 理性的 行爲者만이 準則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나의 삶이 쾌락보다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自殺을 하려
한다면 나의 준칙은 만일 삶이 쾌락보다는 고통을 준다면 나는 자살을 할 것이라는
것이 된다. 나의 준칙은 사실상 나의 行爲의 결정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객관적 원리
처럼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타당하다고 주장될 수 없으며 이 준칙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道德的 準則은 어떤 결과의 산출이나 산출하려고 의도하는 目標와는 無關하다.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준칙은 행위 목표와는 무관한 형식적 준칙이다.

“감각적 경향성에 기초한 준칙을 경험적, 후천적, 실질적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
는 한 행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들에 관계한다. 그러나 선천적 준칙 즉 형식적
준칙은 한 행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들에 관계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에 있어 意
는 한 행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들에 관계한다. 그러나 선천적 준칙 즉 형식적

준칙은 한 행위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들에 관계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에 있어 意志는 原理에 의해서 결정되고 따라서 준칙을 지니기 때문에 의지는 실질적 준칙이나 형식적 준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무에서 말미암아 행위함으로써 자신의 善意志를 드러내는 사람은 실질적 준칙이 아니라 형식적 준칙에 따라 행위한다고 말할 수 있다.”⁹⁾

善한 사람의 준칙은 그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觀點에서 ‘내가 만일 우연히 그것에 대한 경향성을 지닌다면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의무가 무엇이든간에 나는 나의 義務를 行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義務에서 말미암아 행위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즉 경향성의 실질적 준칙이 아니라 의무의 形式的 準則이 그의 행위를 결정지으며 그 행위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準則은 인간행위를 규정하는 意志의 보편타당적, 客觀的 原理로서의 道德法則과 구별해서 의지의 主觀的 原理를 말한다. 이 주관적 원리는 객관적 원리인 道德法則에 적합할 때도 있고 이에 反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성적이면서 또한 이성적 존재라는 二重性 때문이다.

2. 法則과 命法

法則이란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서 法則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예외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KANT의 ‘自由의 法則’ 즉 理性的 行爲者가 理性이 자신의 傾向性들을 완전히 지배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법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존재할 수 없다. 法則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법칙은 보편성이라는 형식을 지니게 되는바 자유의 법칙 즉 도덕법칙과 자연법칙은 보편성이라는 일반적 형

9) H.J. 페이튼, 김성호역, 前掲書, p.87.

식을 共有하게 된다.

우리의 義務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任意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法則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객관적인 도덕기준이 존재해야함을 의미한다. 객관적 기준은 보편적 기준이며 모든 理性的 行爲者에게 타당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은 모든 理性的 行爲者에게 타당한 보편적 법칙의 형식을 지녀야 한다.

KANT는 “단순한 法則 自體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또 동시에 명령일 수 있다.”¹⁰⁾고 말한다. 즉 법칙의 특성으로서 명령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법칙이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성한 의지는 본질적으로 理性的이므로 필연적으로 도덕법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道德法則은 인간이라는 조건하의 우리에게만 命法으로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理性이 傾向性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道德法則은 모든 理性的 行爲者, 즉 행위할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또 오직 이성적 행위자인 한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¹¹⁾고 하면서 KANT는 도덕법칙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道德法則은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우연히 행복과 같은 어떤 목적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의지가 경향성들을 불완전하게 지배할 수 밖에 없는 有限하고 感覺的인 存在라는 우리의 특성 때문에 道德法則은 命法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

10) I.KANT, 鄭鎮譯, 前掲書, p.39.

11) 上掲書, p.55.

3. 假言命法과 定言命法

義務意識에서 말미암은 행위가 善한 행위이며 의무의 자각은 道德的 善이 成立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 된다.

KANT는 “義務의 自覺이란 法則에 대한 尊敬心에서 말미암은 행위의 必然性이다.”¹²⁾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법칙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法則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自然法則이고 또 하나는 道德法則이다. 自然法則이 必然의 法則이라고 한다면 道德法則은 當爲의 法則이다. 그런데 행위에 必然성을 부여하는 법칙은 當爲의 法則 즉 道德法則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를 것이 요구되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의 필연성을 자연적 필연성과 구별하여 實踐的 必然性이라고 한다.

세상의 자연현상은 自然法則에 따라 일어나지만 理性的 存在者만이 法則의 表象에 따라서 즉 원리에 의해서 행위할 能力이 있다. 이것이 意志인 것이다. 인간이 만일 전적으로 理性的 存在라면 인간의 意志活動이 완전히 道德法則에 一致할 것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感性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理性은 理論理性과 實踐理性으로 나누어지는바 實踐理性은 우리의 意志의 규정 근거를 다룬다. 우리의 實踐理性에는 意志를 규정하기 위한 多數의 實踐原理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실천원리중의 하나가 準則이다. 準則이란 앞서 말했듯이 各者 主觀의 意志에 대해서만 타당한 原理이다. 이러한 準則외에 實踐理性에는 모든 인간의 意志를 규정하는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規準이 되는 原理가 있는데 이것을 實踐法則이라고 하고 命法으로 表現한다.

12) 上揭書, p.38.

命法에는 實踐法則으로서 보편 타당한 命法이 있고, 주관적으로 타당한 準則이 있는데 前者는 無條件的인 定言命法이라고 하고 後者를 條件的인 假言命法이라고 한다.

假言命法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당한 수단을 충고하고 지시하는 條件的 命令이다. 만일 老後를 편안하게 보내고자 원한다면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같이 老後의 安樂이라는 條件下에서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命法은 노후의 생활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 목적이 理性的인가 아닌가, 善인인가 아닌가는 전연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 것 뿐이다.

일상 생활에서 개인에게만 타당한 準則이 制約的 條件下에서만 타당한 假言命法을 原理로 해서는 道德性이 확립될 수 없다. 道德性 확립을 위해서는 완전히 보편타당하며 또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命法을 기초로 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이고 그것은 명령된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命令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無上命令이므로 道德的인 命法은 이러한 定言命法에 限定된다. 따라서 定言命法은 道德法則을 달리 표현한 것이요, 道德法則의 性格을 表現한 것이다.

KANT는 定言命法이 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단지 悟性界에만 예속해 있다면 나의 모든 행위는 순수 의지의 自律의 原理에 완전히 따르고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단지 感性界에만 예속해 있다면 나의 모든 행위는 욕망과 傾向이라고 하는 自然法則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¹³⁾ 즉 悟性界와 感性界에 同時に 예속됨을 말한 다음 “그러나 悟性界는 感性界의 근거를 따라서 感

13) 上揭書, p.148.

性界의 法則의 근거도 포함하고, 그래서 나의 의지에 관해서 말하자면 悟性界는 직접적으로 法則을 과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는 비록 他面에서는 感性界에 속하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예지자로서는 悟性界의 法則에 종속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즉 自由의 理念 안에 悟性界의 法則을 포함하는 바 理性에 종속하고 따라서 意志의 自律에 종속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悟性界의 法則은 나에게 대해서 命法으로서 간주되고 이 原理에 合致하는 행위는 義務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¹⁴⁾고 하여 定言命法에 合致하는 행위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KANT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의 二重性을 지적하고 悟性界의 法則이 命法이라는 것과 그 命法에 따르는 행위가 곧 義務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命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道德法則에 따라서 행위하여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다.

모든 道德的 命法을 포괄하는 根本法則인 定言命法은 오직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定式化하였다.

“너의 準則이 普遍的 法則으로 될 것을 네가 同時에 그것에 의해서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準則에 의해서만 행위하라.”¹⁵⁾

너의 主觀的 原理인 準칙이 보편적법칙 즉 모두가 승인할 수 있는 客觀的 法則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이다. 準칙이 스스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準칙에 따라서 행위할 때에만 그 행위가 스스로의 善意志에서 말미암은 道德的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上揭書, p.149.

15) 上揭書, p.79.

IV. 定言命法の 諸類型

1. 普遍法則의 定式

“너의 準則이 普遍法則이 될 것을 그 準則을 통하여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¹⁶⁾ 함이 보편법칙의 정식이다. 定言命法이 우리에게 行하도록 命命하는 바는 그러한 法則에서 말미암아 행위하라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행위의 準則이 普遍法則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KANT는 이 普遍法則을 언급하고 오직 하나의 定言命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모든 특정한 定言命法들의 原理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는 ‘만일 네가 어떤 목적을 의욕한다면 너는 그 수단 또한 의욕해야만 한다’는 假言命法이 모든 가언명법의 原理임과 마찬가지로, 特定한 가언명법들은 그 가언명법의 적용이며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특정한 定言命法들은 이 定言命法의 적용이다.

普遍法則에서 말미암아 행위할 의무에 관한 KANT의 주장은 우리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가 관여하는 것은 오직 도덕적 의무의 형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말한 것의 많은 부분이 의무를 순전히 주관적이거나 자기 이익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대부분의 道德哲學에 공통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듯이 우리 자신외에도 理性的 行爲者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道德的 行爲의 原理는 모든 理性的 行爲者에 대하여 똑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理性的 行爲者도 자기 자신이나 친구의

16) 上掲書, p.79.

이익을 위해서 道德法則에 대한 任意的 예외를 만들 자격은 없다. 궁극적 도덕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특정한 도덕법칙은 客觀的이고 個人과는 無關하며 단지 나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으며, 사람들 상호간에 공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마도 도덕법칙의 보편성은 이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는 義務의 相互性을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原理에 따라 대우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어떤 다른 원리에 따라 대우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도덕적으로 없음을 의미하며, 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나 또한 상대방을 같은 방식으로 대우할 준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KANT의 주장의 더욱 독특한 특성은 추상적인 도덕법칙과 구체적인 개별적 행위 사이의 중개자로서 準則을 도입한 점이다. 지금까지 단순한 法則의 형식에서 특정한 도덕법칙들을 연역해내는 무익한 시도에 관련하여 KANT는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거기서 드러난 원리가 무엇인가를 고려하도록 했다. 문제시 되는 원리 또는 準則은 行爲의 實質的 準則이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지킬 마음이 없는 반환의 약속을 하면서 나는 돈을 빌릴 것이다.”¹⁷⁾와 같은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 행위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려는 原理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 행위자에게도 타당한 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행위를 의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준칙이 우리가 동시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원리라면 형식적인 도덕적 준칙이 되는 것이다.

狀況들이 우리의 도덕판단에서 고려되는 것은 바로 實質的 準則을 통해서이다. 實質的 準則은 ‘생활이 나에게 쾌락보다는 더 큰 고통을 준다면 나는 자살할 것이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 예는 사실 행위의 상황보다는 動機를 지적하기 위한 것

17) 上揭書, p.81.

이지만, 가장 도덕적인 행위에서조차도 狀況을 詳述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본다면 나는 그를 물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는 완전히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물 속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를 물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라면 이는 準則일순 있으나 의무의 준칙은 될 수가 없다.

KANT는 한 행위가 단지 쾌락이나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쾌락과 같은 이른바 善한 결과를 목표삼고 있기 때문에 善하거나 義務的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에서 완전히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善한 것들이 실제로는 惡일 수도 있는 전체적 맥락에서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實踐的인 道德的 命題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規準이 존재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준칙이 普遍法則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어야만 한다."¹⁸⁾ 행위의 입장에서 KANT의 원리는 매우 다른 색채를 띤다. 실제적 실천에 있어 그 원리의 가치는 誇張이 필요 없을 만큼 크다.

우리의 개인적 준칙들을 제3자의 입장에 서서 公平하고 개인과 無關하게 그들이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 원리로서 적합한가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모든 도덕 판단의 필수적 조건이며 우리 자신의 행위와 특성에 가장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심지어 매우 어린 아이들이나 회의적 철학자조차도 그러리라고 추측되는데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이 불공평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정확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이 기꺼이 이런 原理들을 채택하여 普遍化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특히 그렇게 보편화되었을 때만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려 한다면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악한 사람조차도 비록 그들이 이를 普遍化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正義와 不正義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은연중에 客觀的이라고 주장하는 기준들을 옹호함에 있어 KANT의 보편

18) 上掲書, p.84.

법칙의 원리에 호소하고 있다. KANT가 주장하듯이 참으로 理性的인 意志는 理性的인 마음이 整合的으로 思考하는 것처럼 整合的으로 의욕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理性的의 行爲者가 우리를 어떤 보편적 원리들에 따라서 대우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은 그런 원리들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음을 모순없이 주장할 수는 없다.

한 準則이 普遍法則이 될 것을 의욕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任意的 예외를 허용할 것을 의욕한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존재한다. KANT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실제로 법을 어길 때 발생하는 일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非道德的 準則이 普遍法則이 될 것을 의욕하지 않으며, 法則의 유효함을 잘 알면서도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든지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한다. KANT는 理性的의 觀點에서는 여기에 모순이 존재하지만 行爲에 있어서 그것은 차라리 理性과 傾向性 사이의 대립이고 이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궤변적으로 道德法則을 보편적이기 보다는 일반적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한다.

KANT는 “우리가 定言命法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렇듯이 유달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은 몇몇 하찮은 예외들을 허용한다.”¹⁹⁾고 주장한다.

KANT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準則이 普遍法則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을 때 그 準則에 따라서 行爲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가정된다. 말하자면 이는 어떤 준칙의 가능한 보편성은 우리에게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KANT의 견해에서 普遍性的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準則에 따라 행위하는 것은 그르게 행위하는 것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

지금까지 KANT의 定言命法은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였는데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傾向性에 따라서 快樂을 주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19) 上揭書, p.85.

2. 自然法則의 定式

自然法則의 定式이란 “너의 行爲의 準則이 너의 意志에 의해서 普遍的 自然法則이 되는 것처럼 行爲하라.”²⁰⁾이다.

普遍的 法則이란 理性이 욕구능력을 완전히 지배하는한 모든 理性的 行爲者가 이에 따라서 行爲하는 法則이었다. 그런 법칙을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그 법칙에 따라서 行爲하는 세계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는 바로 KANT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매우 분별있는 절차이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불조심하라는 의무는 때때로 모든 사람이 이를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해서 강조가 된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어떤 준칙은 그것이 우리의 意志에 의하여 普遍的 自然法則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行爲의 準則이 동시에 보편적 自由의 法則이 될 것을 의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準則이 보편적 自然法則이 될 것을 의욕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²¹⁾ 그러므로 ‘~인 것처럼 行爲하라’고 말한다.

KANT는 매우 엄격한 의미에서 自然法則을 因果法則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점이 그런 법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즉 같은 원인은 항상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自殺에 관한 KANT의 논의를 해석하는 것은 아마 이런 기초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준칙은 “만일 삶이 나에게 쾌락보다는 더 큰 고통을 준다면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²²⁾로 가정된다. 이는 自己愛의 原理이며, 自己愛는 삶의 연장을 위해서 작용해야 할 사명을 지

20) 上掲書, p.80.

21) 上掲書, p.107.

22) 上掲書, p.80.

닌다는 경험적 지식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만일 이 自然法則의 準則을 普遍化시킨다면 삶의 原因인 自己愛가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의 원인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自然法則이 任意의 예외를 허용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로부터 그 準則은 道德法則에 相反된다는 推論이 이루어진다. 즉 그 準則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道德法則이나 自然法則에는 어떤 任意의 예외가 존재할 수 없다는 KANT의 말은 옳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道德法則을 어김을 推論해낼 수 있는 自然法則의 어김을 발견해내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삶의 원인인 음식이 특별한 상황에서 죽음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이것이 自然法則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삶의 원인인 自己愛가 특별한 상황에서 죽음을 일으켰다고 하여도 이것이 因果法則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조금도 없을 것이다.

KANT는 모든 경우에 目的論的 考慮에 호소한다. 따라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自然法則은 因果的이 아니라 目的論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自然은 法則에 의하여 지배되는 현상들의 總體이며 현상들은 自然의 內容이다. 그러나 현상들이 自然을 단순한 混沌狀態로 두지 않고 구성하는 형식은 法則의 形式이다. 이 法則은 일차적으로 因果法則인데 이는 物理的 物體의 기계적 因果關係 뿐만 아니라 動物의 本能的 行動들, 그리고 또 어떤 觀點에서는 모든 인간 행위와 경험까지도 포괄한다. 그렇지만 자연에 있어서 因果法則이 KANT가 인정하는 유일한 법칙은 아니다. 物理的 自然을 이해함에조차 우리는 因果法則의 개념이외에 또 다른 개념 즉 目標나 目的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개념은 유기체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기체나 그것들의 기관이 의식적 목적의 產物이라거나 또는 그 자체가 어떤 意識的 目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마치 그것들이 목적을 지니고 있는 듯이 고려해야 하며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本性을 이해함에 있어 目標 또는 目的의 개념은 훨씬 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에 목적을 세우는 것이 인간 본성의 本質的 特性이기 때문이다.

道德도 우리가 마치 自然 그 자체가 合目的的이며 최후의 목적을 지닌듯이 행위할 것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기 조차 한다. 因果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目的論的인 自然法則에 대한 KANT의 호소는 언뜻 보기에는 任意的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그런 경우와는 무관하다. 어떤 제시된 준칙을 자연법칙으로 생각하도록 요구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目的論的 自然法則으로 생각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準則은 行爲의 準則이며 行爲 자체는 본질적으로 合目的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준칙을 자연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것을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으로 생각하도록 요구받으며 인간 본성은 본질상 合目的的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KANT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실천이성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이성엔 目的 自體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즉 이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²³⁾고 하였다. 그리고 만일 실천이성이 目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행위에 대한 準則들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결코 실천이성일 수 없을 것이다.

KANT의 주장은 그의 自然法則이 인간의 目的들의 調和와 關連하는 目的論的인 것으로 해석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실천이성이 인간의 목적들과 그들 사이의 체계적 조화의 실현에 관련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존재한다.

普遍法則과 自然法則의 두 定式이 함께 행위를 인도하는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살펴보면 우선 선한 사람은 자기 利益의 原理가 단독으로 행위를 이끄는 것을 도외시

23) I.KANT(1797), 「도덕형이상학」, 박태훈역(1965), 형설출판사, p.123.

해야 하며 그 원리를 보다 넓고 非個人的이며 공정한 원리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행위하는 원리, 또 모든 理性的 行爲者에게 타당한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원리에 두어야만 한다. 이는 意志에 있어서 태도의 기본적 변화이며 새로운 정신의 채택이고, 또 바로 도덕적 생활의 본질이며 원리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보편법칙의 정식에서 표현된다. 어쩌면 너무 쉽게 KANT는 이런 태도를 채택한 意志 자신의 本性에 의해서 실제적 생활에 있어 자신의 방식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KANT는 法則의 공허한 형식이 채워져야만 하며 인간의 合目的인 행위는 原理들이나 그 안에서 작용하는 準則들을 고려함에 의해서 法則 아래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準則들이 우리의 意志作用의 結果로서 自然法則이 될 것을 상상하여야만 한다.

準則에 대한 평가 기준은 自然法則과 一致하는 것으로서의 目的의 체계적 조화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도덕적 행위의 평가 기준일 뿐이며 本質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조화를 개미의 집단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KANT는 “만일 도덕법칙이 目的들의 체계적 조화의 개념 안에 포함된다면 이 개념과 우리가 그런 조화를 존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념은 동시에 순수한 도덕적 의지의 결정 근거가 된다.”²⁴⁾고 하였다.

3. 目的 自體의 定式

KANT의 定言命法 셋째 유형은 “너 자신의 人格에 있어서나 모든 다른 사람의 人格에 있어서 인간성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目的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²⁵⁾이다.

24) I.KANT, 최재희역, 前掲書, p.196.

25) I.KANT, 鄭鎮譯, 前掲書, p.94.

이는 人格 자체에 대한 尊重을 명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定式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理性的 存在 자체를 포괄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理性的 存在는 인간 뿐이므로 우리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또는 理性的 存在로서 존중하도록 명령받는다.

이는 인간성이라는 用語의 사용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 用語는 理性을 소유한 특히 理性的 意志를 소유한 인간의 本質的 特性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성질 때문이다.

‘동시에’와 ‘단순히’라는 단어는 KANT의 言明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편지를 부칠 때마다 우체국 직원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들 자신의 意志와 일치하며 참으로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리라고 믿는다. 이런 종류의 考慮는 편지에 붙이는 우표나 편지를 넣는 우체통과 관련해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사물이 아니라 오직 사람과 관련해서만 일어난다. 우리의 행위를 그러한 고려를 통해서 制限하는 한 비록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그들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 定式은 行爲者가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우할 때에도 적용이 된다. 모든 義務는 個人的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人格을 존중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들은 즉시 수반된다고 한다. KANT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닐 수 없다.”²⁶⁾고 주장한다.

KANT는 “단지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향성의 만족이나 경향성에 기초한 目的들의 달성에 대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첨가되어야 한다.”²⁷⁾고 말한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26) I.KANT, 박태훈역, 前掲書, p.86.

27) I.KANT, 鄭鎮譯, 前掲書, p.102.

자신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의 수행에 있어서의 희생은 나의 理性的意志를 경향성의 만족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선한 행위를 법칙의 실현에 대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조차 잘못이며 선한 행위가 바로 法則의 實現이다.

KANT는 “모든 定言命法은 行爲를 명령하며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을 지녀야 한다. 그렇다면 경향성에 도움이 되는 理性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理性 그 자체에 의해서 부여된 목적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이런 목적들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타당해야 하며, 단지 主觀的이 아니라 客觀的이어야 하며, 相對的이 아니라 絕對的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相對的 價値가 아니라 絕對的인 價値를 지녀야만 하고 단지 특정한 종류의 行爲者에게 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善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目的 자체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²⁸⁾고 말했다.

定言命法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목적을 명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목적들은 절대적 가치를 지녀야만 하므로 우리가 산출하려고 하는 상대적 목적일 수는 없다. 그 목적은 理性的 행위자 또는 실제로는 인간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절대적 가치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定言命法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定言命法은 우리에게 인간을 절대적 목적 또는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고 명령한다.”²⁹⁾고 KANT는 말했다.

KANT는 각각의 사람이 자신의 福祉에 대한 利己的인 관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모두의 福祉에 대한 관심을 지녀야만 한다고 생각될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도 타당한 同一한 理性的 근거에서라는 KANT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도덕법칙에 종속되며 따라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ANT는 “나는 理性的 行爲者

28) 上揭書, p.93.

29) 上揭書, p.94.

로서의 나의 本性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래야만 한다. 나의 理性的 本性 때문에 나는 모든 개인들을 나 자신을 포함하여 도덕적 행위자로서 간주하고 대우해야 한다.”³⁰⁾고 하였다.

만일 도덕이 어떻게 고려되든 간에 보편법칙에 복종하는 理性的 意志가 傾向성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理性的 意志를 단지 경향성의 만족 또는 단지 경향성을 돕기 위하여 理性이 형성한 目的의 成就에 대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非道德的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KANT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상대적인 목적의 추구를 배제하지 않으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목적의 추구를 명령한다.”³¹⁾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이런 상대적인 목적들이 궁극적인 목적 즉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있어서의 善意志의 실현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 아래에 놓여야만 함을 의미한다.

4. 自律의 定式

“너의 意志가 자신의 準則을 통하여 同時에 자기 자신을 普遍法則을 세우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³²⁾

이 定式은 理性的 意志가 자신이 따르는 법칙을 세우거나 스스로 제시한다는 原理 즉 自律의 原理에 기초한다. 다시 말하면 意志의 準則이 同時에 보편법칙을 세우는 原理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服從하는 法則을 形成해야만 한다. 意志는 法則에 복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法則을 세우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ANT는 “오직 자신의 법칙을 세우는 경우에만 그 法則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²⁾고 하

30) 上揭書, p.93.

31) 上揭書, p.92.

32) 上揭書, p.103.

33) 上揭書, p.100.

며 또 “自律은 단지 法則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法則을 세우는 존재로서의 道德的 個人에 속하는 무조건적이고 絕對的인 價値의 요소이다.”³⁴⁾라고 하여 法則을 세우는 존재로서의 理性人間을 강조하였다.

理性的 行爲者는 그 자신을 동시에 자신의 準則을 통하여 普遍法則을 세우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서만 행위하여야 한다. KANT는 자유롭고 自律의이며 道德的인 의지는 자신의 의무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필요나 욕구, 어떤 병리적 관심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KANT는 우리의 감각적 동기가 만일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우리의 準則으로 채택되어야만 한다는 점과, 만일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려면 우리의 準則이 결국 法則의 理性的 意志作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道德的 人間이 그의 準則을 통하여 특정한 도덕 법칙을 세우거나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法則의 理念은 순수한 실천이성에 그 根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道德法則의 수립은 理性的 동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特權을 구성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통하여 立法하는 準則들은 그의 감각적 본성에 기초하며 단지 순수한 理性에만 기초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定言命法은 抽象化된 思考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적용되어야만 한다. 인간의 理性은 推論的이므로 모든 理念과 모든 原理, 그리고 모든 概念까지도 모두 抽象的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구체적 실례를 들 수 있는 이론적 원리들의 경우에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모든 사건은 어떤 원인을 지녀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선천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계의 규칙적 연쇄의 연구에 의해서 추상적인 定式을 메꿀 수 있다.

34) 上揭書, p.114.

5. 目的의 王國의 定式

“너의 準則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항상 普遍的인 目的의 王國의 法則을 세우는 구성원이듯이 행위하라.”³⁵⁾

이 定式은 KANT의 定式들 중 가장 포괄적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의 형식(普遍法則)과 內容(目的自體) 둘 다를 모두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自由의 法則과 自然法則을 연관지우며 自律의 定式과 마찬가지로 道德적으로 善한 사람이 自身の 準칙을 통하여 자신의 法則을 세우는 自由를 명백하게 한다.

道德이 命命하는 행위는 法則의 구현으로서 그 자체에서 말미암아 행해져야만 하며 우리 자신의 利益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KANT는 道德法則이 어떤 目的의 추구를 명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이 그러한 목적의 추구 때문에 도덕적으로 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려면 그는 자기 利益이나 本性的 衝動의 만족과는 다른 동기를 지녀야만 한다. 도덕적 행위에는 단지 正當한 목적의 추구가 아닌 道德的 動機가 존재해야만 한다.

自律의 定式에서 모든 理性的 行爲者는 자신을 자신의 準칙을 통해서 보편법칙을 세우는 존재로 존중하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는 觀點을 채택하도록 명령되었다. 이는 곧바로 王國의 개념에 자기 규제적 사회이고 공동적이며 스스로 부과한 객관적인 법칙하에서 理性的 行爲자들이 연결된 체계의 개념에 도달한다. 이는 또한 목적의 王國의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목적자체의 정식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法則은 모든 사람들을 결코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同時에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만일 普遍法則의 原理와 目的自體의 原理를 결합한다면 우리는 목적의 王國을 생

35) 上揭書, p.111.

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목적의 王國은 앞서의 原理들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王國은 우리의 실제 사회와는 매우 다르며 하나의 理想이라고도 할 수 있다.

“目的의 王國은 우리가 추구하여야만 하는 모든 목적들의 全體 또는 體系이다. 이런 목적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理性的 行爲者일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理性的 行爲者가 자신의 앞에 세울 수 있는 개별적인 목적이다. 목적의 王國은 私的인 목적들이 普遍法則과 兩立이 可能한 限에서만 그런 목적들과 관련한다.”³⁶⁾고 하면서 KANT는 목적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스스로 부당한 객관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목적의 王國의 體系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私的인 目的들이 실현되어야 하는 全體的 構造이다. 그러한 全體的 構造는 그것의 명백한 공허성에 의해서 인간 의지의 創造性이 발휘될 공간을 남겨 놓는다.

KANT는 “目的의 王國에는 최고 통치자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³⁷⁾ 그러한 최고의 통치자는 법칙을 만든 자이며 目的의 王國의 구성원들처럼 法則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직 신성한 존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성한 존재는 자신의 理性的 本性 때문에 필연적으로 理性的으로 행위하므로 사실 도덕법칙을 넘어서지 않지만 자신의 意志를 제한하는 법칙을 넘어서며 그래서 義務나 책무를 넘어서고 이런 의미에서 法則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하게 理性的인 존재이어야만 한다.

KANT는 “비록 목적의 王國의 구성원들은 최고의 통치자와는 달리 法則에 종속되지만 그들 자신의 理性的 意志가 부당한 法則에 종속된다. 목적의 왕국은 오직 구성원들의 自律 또는 意志의 自由를 통해서만 가능하다.”³⁸⁾고 하면서 목적의 왕국 구성

36) 上揭書, p.111.

37) 上揭書, p.112.

38) 上揭書, p.112.

원의 意志自由를 강조 한다.

이 自律은 그들의 절대적 가치 또는 그들의 존엄등의 근거가 된다.

“존엄이나 귀중함은 어떤 값어치와도 無關하며 그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것과 代置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³⁹⁾고 하여 KANT는 도덕적 인격의 존엄을 강조한다.

理性的 存在가 目的의 王國의 法則을 세우는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덕성을 통해서이다. 오직 도덕성과 도덕성의 능력이 있는 한에서의 인격만이 존엄이나 귀중함 또는 內的價値를 지닐 수 있고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美的 活動까지도 단지 조건적으로 善하다. 즉 그것들의 사용이 도덕법칙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선하다.

完全하게 道德法則과 一致하는 理性的 行爲者들의 세계를 생각할 때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해야만 한다는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자연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도덕적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KANT는 이를 도덕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나 심지어 임무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모든 목적들과도 무관하다는 생각에서 叡智界라고 묘사한다. 그러한 세계의 개념은 감각이나 경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쳐야만 하는 실천적 이념이므로 우리는 그 개념이 어떤 감각을 넘어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KANT는 이 개념을 목적의 왕국의 개념과 동일시하며 이 세계가 행위에 표현되는 것을 추상화한 바라고 여기는 듯이 보인다. 그는 이성적 의지의 自律 때문에 우선 叡智界라고 묘사된 理性的 行爲者의 세계가 목적의 왕국으로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KANT는 “目的의 王國은 오직 理性的 行爲者들이 定言命法에 의해서 규정된 준칙들을 보편적으로 따를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⁴⁰⁾고 하였다. 명백히 그런 왕국은 오

39) 上揭書, p.113.

40) 上揭書, p.111.

적 이성적 행위자들이 항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른 바 인간 본성의 왕국을 구성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V. 道德法則의 實踐可能性

道德法則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의무, 의지, 자유등인데 그 중에서 自由는 道德律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道德律은 他律이 아니고 自律이기 때문이다. 이 自律은 理性的의 自律意志에서 연유되며 이로 인해서 道德法則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도덕법칙은 感性에서가 아니라 理性에 의해서만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理性과 感性을 동시에 지닌 二重的의 存在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道德法則의 실천이 가능하겠는가.

理性的의 存在者가 자기의 준칙을 보편적 실천법칙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준칙을 실질의 면에서 의지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형식의 면에서만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를 포함한 원리로서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형식의 면에서만 의지를 규정하는 순수 자발성으로서의 原因性이 自由이다. 이 자유를 전제로 삼아야만 意志 規定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의지는 자발적인 의지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형식인 것이다. 意志의 규정 근거를 實踐的의 法則이라고 한다면 이 법칙은 自己 自身을 규정하는 의지 형식인 것이고 따라서 法則을 주는 형식이다. 여기에서 “너의 意志의 準則이 항상 同時에 普遍的의 法則 立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⁴¹⁾는 道德法則이 成立하는 것이다.

道德法을 수립하는 意志는 道德法則을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KANT는 道德法則의 立法 근거를 理性的의 實踐的인 면에서 찾았다. 그는 또한 도덕법칙은 理性的의 所産이므로 實踐理性에 의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KANT가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普遍的으로 立法하는 理性的인 것에 있다.”⁴²⁾고

41) 上揭書, p.79.

42) 上揭書, p.85.

할 때의 이立法하는 능력이 實踐能力인 것이다.

道德法則은 우리가 지켜야 할 法則이다. 또한 道德律은 실천하는 데에 그 價値가 있는 것이며 '너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는 실천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理性이 없는 존재는 自然必然性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만 理性的 存在者의 意志는 욕망된 客體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만약 인간이 自然必然性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움직인다면 인간의 행위는 완전히 他律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意志가 自己活動의 法則을 自身에게 주는 한 즉 의지가 自律인 한은 이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自由이다. 自由의 本質은 이러한 적극적 의미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道德法則의 실천 가능성은 소극적 의미의 자유에서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 안에 있다.

理性的 存在者인 인간에게 있어서 自律的 意志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덕법칙도 그 實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道德法則의 실천가능성의 근거는 이렇게 自律的 意志中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존재는 일면 감성계에 속하고 또 다른 면은 가상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감성에 지배될 때에는 傾向性이나 愛着心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感性界의 一員으로서는 道德法則에 따르지 못하고 愛着心에서 좌우되거나 可想界의 一員일 수 있는 자기를 깨닫게 되면 自律的으로 道德法則을 받아 들이게 된다.

VI. 結 論

이상에서 善意志란 義務意識이 수반되는 意志를 말하며 義務의 自覺은 道德法則에 대한 존경심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道德法則은 정언명법의 형식으로서 다섯가지 유형으로 定式化하였음을 고찰해 보았다.

KANT는 幸福主義 倫理를 거부하고 인간 행위를 결정짓는 의지의 근거를 형식적, 先驗的 原理에서 찾고 있다. 즉 인간에게만 內在하는 理性 自身の 法則에 의해서 意志가 규정될 때에만 인간의 행위는 진정한 道德性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경험적 요소가 배제된 가운데 인간의 모든 行爲는 法則에 따르는 義務意識에서 行해질 때 만이 참으로 도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道德을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개개인의 主觀에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 각인의 의지의 활동이 여하한 개별적 행위로서 이뤄진다고 하여도 그 행위는 사회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덕은 개인의 준칙만으로는 成立될 수가 없고 행위의 기준으로서 道德法則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인간 各人의 準則이 普遍的 法則이 되도록 行爲하는 定言命法은 인간의 행위가 道德法則과 항상 一致해야 함을 요구하며 이는 道德法則에 대한 尊敬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참으로 道德的이기 위해서는 道德法則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에서 義務를 行하고자 하는 人間 意志의 自律에 있음이 明白해진다.

그런데 “意志의 自由란 스스로 道德法則을 수립하고 또한 그 立法에 따르고자 하는 意志의 積極, 能動性이므로 道德法則이란 自律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⁴³⁾ 라고 하면서 意志의 自律이 가능함으로써만이 道德法則이 存在할 수 있다고 하였다.

KANT는 道德法則을 절대적 當爲의 法則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道德法

43) 上揭書, p.39.

則을 준수함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自由意志는 感性界의 경험적 제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 意志의 규정 근거를 법칙의 형식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우리 인간에게 定言命法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個人的 準則이 普遍的 法則이 되도록 행위하라는 定言命法은 行爲가 道德法則과 一致할 것을 요구한다.

道德의 實現은 理想임과 동시에 現實的 요구이다. 理想이기 때문에 人間이 追求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주어지고 善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된다.

理性的 存在者인 인간에게 意志의 自由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定言命法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感性界와 可想界의 一員이라는 兩面性을 띤 存在가 인간이긴 하지만 可想界의 一員일 수 있다는 사실과 道德的인 삶의 追究가 理性的 人間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한 우리는 定言命法의 實踐을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 문헌

〈단행본〉

- 칸트(1788), 「실천이성비판」, 최재희 역(1975), 박영사.
- 칸트(1781), 「순수이성비판」, 윤성범 역(1980), 을유문화사.
- 칸트(1785), 「도덕철학원론」, 정진 역(1970), 을유문화사.
- 칸트(1797), 「도덕형이상학」, 박태훈 역(1965), 형설출판사.
- W.O. 퇴에링(1964), 「칸트철학 입문」, 김용정역(1985), 증원문화.
- H.J.페이톤(1970), 「칸트의 도덕철학」, 김성호역(1988), 서광사.
- 김영철(1983), 「윤리학」, 학연사.
- 김용정(1978), 「칸트철학연구」, 유림사.
- 김태길(1964), 「윤리학」, 박영사.
- 박선목(1987), 「칸트철학으로 가는 길」, 부산대학교 출판부.
- 임태평(1981), 「칸트교육철학」, 학문사.
- 최재희(1990), 「칸트의 생애와 철학」, 명문당.
- 최재희(1981), 「서양윤리 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단석(1983), 「칸트철학사상의 이해」, 양영각.

〈논 문〉

- 김기수(1988), “칸트의 최고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종찬(1987), “칸트의 도덕법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배채진 (1984), “칸트의 정언적 명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상운 (1983), “칸트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백형 (1981), “칸트철학에 있어서 최고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원희 (1986), “칸트도덕법칙의 성격”,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 서양 문헌

- Briittan, Gordon, G. (1978), 『KANT's Theory of Sci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dwards, P. (1972),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publishing Co.,
- Friederich, C. T. (1977), 『The philosophy of KANT』, The Modern Library.
- Jones, H. E. (1971), 『KANT's Personalit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Wilkerson, Terence Edward (1976),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s, A Commentary for Student's』, Oxford Clarendom.
- Wright, Wik. (1929), 『General Introduction to Ethics』, The Macmillan Press.

Summary

A Study on the Moral Law in KANT's Ethics

Oh Seung-yong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h Jeong-hoon

This thesis aims at a study on moral law of KANT's ethics, and good-will and moral duty as pre-consideration for formation of moral law.

Good-will means the will which involves duty consciousness, and only behaviour beginning with duty consciousness can be moral behaviour.

KANT said that duty awareness is to origin in reverence of law and should involve moral law which all people must comply with. This moral law is the law of necessity to be practiced and appears to be as an order form.

There are five types in categorical imperative a formula of universal law, a formula of natural law, a formula of the end in itself, a formula of autonomy, and a formula of the kingdom of ends. Each type is required that human behaviour should accord with moral law. If so, can we practice moral law at

all? In human being, a reasonable being, the freedom of the will can be possible. As the will can be free, moral rule, which can regulate under the reason world, is doubtless to be practiced. Though human being involves both the sensible world and intelligible world, it is proved that moral law can be practiced because a reasonable human is a part of intelligible world.

In short, this study is argued by the method of documents study through laying stress on KANT's "The Principles of Moral Philosophy".

